

울산지방법원 2023. 5. 16 선고 2022가단5986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4. 18.

판 결 선 고 2023. 5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269,3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. 2. 29.부터 2012. 9. 12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3520호 보증채무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. 9. 5. 주문 기재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이 2012. 9. 28.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위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.

2. 결 론

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오규희